

[규칙명 개정 2015. 8. 12(舊 의료원 교내연구비 관리규칙)]

의료원 원내연구비 관리규칙

제정 2011. 7. 27

1차개정 2015. 8. 12

2차개정 2020. 2. 19

3차개정 2020. 3.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연구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의료원 원내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 2 조 (종 류) 연구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입교원연구비
2. M.D. 기초의과학자 정착연구비
3. 대학원의학과 연구비
4. 대학원간호학과 연구비
5. 학생연구비
6. 우수중견연구자(임상교원) 연구비 <신설 2015.8.12>
7. 임상-기초 중개협동 연구비 <신설 2015.8.12>
8. Ajou Translational Research Center(이하 “ATRC”라 한다) 연구비 <신설 2015.8.12>
9. 대형과제 수주지원 연구비 <신설 2015.8.12>
10. 기타 원내연구비 <신설 2015.8.12>

제 3 조 (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입교원연구비’라 함은 의료원에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의 연구촉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개정 2020.3.9.>
2. <삭 제 2020. 3. 9>
3. <삭 제 2020. 3. 9>
4. ‘M.D. 기초의과학자 정착연구비’라 함은 의과대학에 신규 임용된 M.D.기초의과학자의 연구촉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5. ‘M.D. 기초의과학자’라 함은 의과대학 기초학교실(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및 약리학교실) 전임교원으로서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8.12>
6. ‘대학원의학과 연구비’라 함은 대학원의학과 학생과 지도교수의 연구촉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7. ‘대학원간호학과 연구비’라 함은 대학원간호학과 학생과 간호대학 교수의 연구촉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8. ‘학생연구비’라 함은 학부 학생들의 실질적 학문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9. ‘우수중견연구자(임상교원) 연구비’ 라 함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관련 임상교원의 연구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연구역량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인력(진료교수 또는 연구교수)에 대한 연구비를 말한다. <신설 2015.8.12>
10. ‘임상·기초 중개협동 연구비’ 라 함은 임상·기초 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의료원 내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신설 2015.8.12>
11. ‘ATRC 연구비’ 라 함은 기술사업화 연구 수행을 통한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신설 2015.8.12>
12. ‘대형과제 수주지원 연구비’ 라 함은 국책연구과제 등 대형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 및 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신설 2015.8.12>
13. ‘기타 원내연구비’ 라 함은 원내연구비로 추가 조성된 연구비를 조성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신설 2015.8.12>

제 4 조(주관부서) 연구비 수혜자 선정 및 연구결과물에 관한 행정업무는 교학팀(신임교원연구비, M.D.기초의과학자 정착연구비, 대학원의학과 연구비, 대학원간호학과 연구비, 학생연구비)과 연구행정팀(우수중견연구자(임상교원) 연구비, 임상기초 중개협동 연구비, ATRC 연구비, 대형과제 수주지원 연구비, 기타 원내 연구비)에서 담당하며, 연구비 관리는 연구행정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5.8.12>

제 2 장 연구비 수혜자의 선정

제 5 조(연구비 신청 자격) ① 각 연구비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임교원연구비 : 신청일 현재 의료원 임용 5년 이내의 전임교원 <개정 2020.3.9.>
 2. M.D. 기초의과학자 정착연구비 : 신청일 현재 의과대학 임용 3년 이내의 M.D. 기초의과학자
 3. 대학원의학과 연구비 : 신청일 현재 대학원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지도교수
 4. 대학원간호학과 연구비 : 신청일 현재 간호대학 교원인 자
 5. 학생연구비 : 의과대학, 간호대학 재학생 <신설 2015.8.12., 개정 2020.2.19.>
 6. 우수중견연구자(임상교원) 연구비 : 임상교원 중 연구트랙교원 또는 연구중심병원 유닛과제 수행교원 <신설 2015.8.12>
 7. 임상기초 중개협동 연구비 : 전임교원으로서 공동연구팀을 구성한 임상교원과 기초교원 <신설 2015.8.12>
 8. ATRC 연구비 : 기술사업화 가능한 ‘특허출원’ 실적이 있는 전임교원 <신설 2015.8.12>
 9. 대형과제 수주지원 연구비 : 대형과제 수주 준비 및 진행중인 전임교원 <신설 2015.8.12>
 10. 기타 원내연구비 : 원내연구비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함 <신설 2015.8.12>
- ② 연구비 신청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교내외에서 연구비를 수혜한 적이 없어야 한다.
- ③ <삭 제 2020. 3. 9>
- ④ 대학원의학과 연구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도학생의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과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을 제출한 논문의 연구과제는 신청할 수 없다.
-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1.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예정인 자
 2. 연구완료 불능 판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책임자
 3. 연구비를 반납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4. <삭 제 2015. 8. 12>

제 6 조(연구비 지원 신청) 전 제5조의 자격을 갖춘 교원이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실행예산서 등 관계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 또는 첨단의학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2>

제 7 조(연구과제의 심사 및 선정) ① 각 연구비 심의 관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임한 심사위원단(이하 “심사위원단”이라 한다)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심사위원단에서 제출한 결과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대학(원)장 또는 첨단의학연구원장이 연구비 수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8.12>

제 3 장 연구의 수행

제 8 조(연구기간) ① 각 연구비의 연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입교원연구비 : 1년
2. M.D. 기초의과학자 정착연구비 : 3년
3. 대학원의학과 연구비 : 2년
4. 대학원간호학과 연구비 : 1년
5. 학생연구비 : 1년 <신설 2015.8.12>
6. 우수중견연구자(임상교원) 연구비 : 3년 이내 <신설 2015.8.12>
7. 임상기초 중개협동 연구비 : 1년 <신설 2015.8.12>
8. ATRC 연구비 : 2년 이내 <신설 2015.8.12>
9. 대형과제 수주지원 연구비 : 1회 <신설 2015.8.12>
10. 기타 원내연구비 : 별도로 정함 <신설 2015.8.12>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연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장 1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 9 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계획의 변경은 연구 종료 2개월 전까지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 또는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 또는 첨단의학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기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대학(원)장 또는 첨단의학연구원장의 위임을 받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제 10 조(실행예산의 변경) 실행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연구행정팀에 제출한다. 단, 인건비와 직접비의 금액을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 또는 첨단의학연구원장의 위임을 받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개정 2015.8.12>

제 4 장 연구책임자의 의무 등

제 11 조(연구종료 보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매1년 단위로 연구중간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일까지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 또는 첨단의학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2>

② 연구책임자가 퇴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중단사유서와 연구경과 및 연구비 정산 보고서를 대학(원)장 또는 첨단의학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2>

③ 연구중단사유서는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연구경과 및 연구비 정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비 집행내역
2. 서론
3. 연구목적 및 배경
4. 연구내용 및 방법(범위)
5. 중단된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내용 및 결과
6. 향후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 12 조(연구결과의 관리) ① 연구종료 후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연구결과를 “아주대학교 ○○대학 ○○년도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을 명기하여 학술지에 발표하고, 그 별책 1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1. 대학원간호학과 연구비를 수혜한 연구책임자는 그 연구결과를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 학술지 포함) 또는 SCIE급 등재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M.D. 기초의과학자 정착연구비, 대학원의학과 연구비를 수혜한 연구책임자는 그 연구결과를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신입교원연구비를 수혜한 연구책임자는 그 연구결과를 SCIE급 등재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1항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연구완료 불능 여부를 판정한다.

제 13 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학(원)장 또는 첨단의학연구원장은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1. 연구비를 지급목적 또는 연구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임의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때
4. 연구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5.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때
6. 의료원 교직원 신분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제12조 제2항의 의거 연구불능 판정을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기 사용한 연구비의 1/3을 반환하여야 하며, 승진 및 승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비의 반환은 연구비 수혜 전에 연구자가 제출한 반환방법에 따르며, 별도의 반환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1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준 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원 연구비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 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의료원 교내연구비 관리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SCI, SCIE 통합에 따른 적용례) 제12조 제1항의 적용은 2020년 이후 논문부터 적용하며 이전 논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